

2025학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



울산대학교

목 차

- I. 안전보건관리 개요 및 목표
- II. 안전 · 보건 경영방침
- III. 안전보건관리 조직도
- IV. 우석대학교 현황
- V. 주요 추진 과제
- VI.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표
- VII. 연간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표

I. 안전보건관리 개요 및 목표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① 제4조 제5항 나목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- ② 제10조 제4항 (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)
 -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,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

1. 목표 및 기본방향

비전

쾌적하고 안전한 대학생생활 구현

목표

구성원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중대재해 ZERO 환경 조성

추진과제

1

안전·보건관련 규정 철저 준수

- ▶ 안전·보건 관리 체계 구축
- ▶ 중대재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

2

안전교육·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

- ▶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 정기교육 및 상시교육 실시
- ▶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정기교육 실시
- ▶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 실시
- ▶ 안전·보건 관련 교육 및 교재 제공

3

유해·위험요인 적극 발굴 및 제거

- ▶ 주기적인 대학시설 점검 및 조치
- ▶ 실험·실습실 정밀안전진단 실시
- ▶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

4

교직원·학생 안전 보건 환경 유지

- ▶ 우석의 소리 운영
- ▶ 학생상담센터 운영

우석대학교 안전 · 보건 경영방침

우석대학교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,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·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·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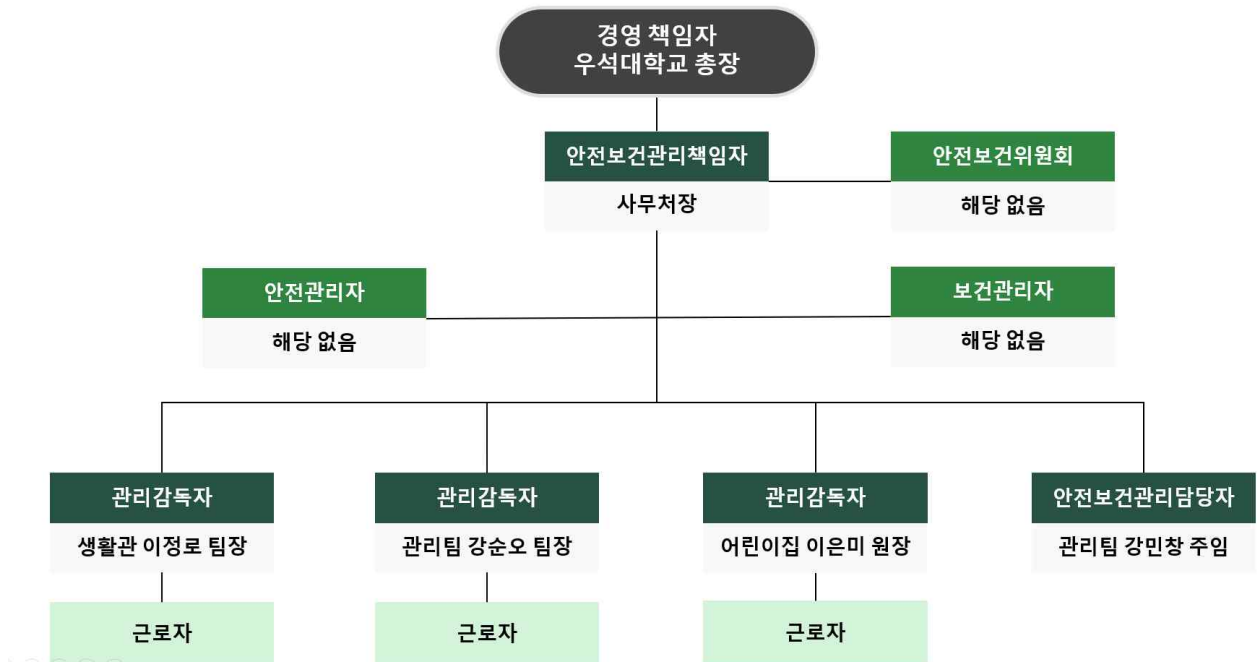
1. 우석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안전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.
2. 구성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.
3. 안전·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·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.
4.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사건·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5.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 대책 마련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보장하고, 이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·보건 경영을 실현한다.

2025. 03. 01.



우석대학교 총장

III. 안전보건관리 조직도



※ 현업업무종사자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선임 해당 없음

구 분	추진업무
관리감독자	-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-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교육·지도 -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-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 - 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 -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 등
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	직무와 관련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

IV. 우석대학교 현황

1. 일반 현황

가. 대 상: 근로자, 현업업무종사자, 용역업체 종사자

나. 현 황:

- 근로자: 943명(모든 교직원 / 현업업무종사자 포함)
- 현업업무종사자: 34명

구분	계	시설관리	운전(총장)	어린이집
인원수	34명	24명	1명	7명

- 용역업체 종사자 현황

구분	계	환경미화	경비(캡스)	운전(스쿨버스)
인원수	50명	36명	9명	5명

2. 우석대학교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 계약 현황

가. 기 간: 2025. 3. 1. ~ 2026. 2. 28.

나. 업체명: (주)대한산업안전본부

다. 안전관리 업무 수행내용

- 사업장의 취지와 목적 및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내용 지도
-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및 지도
- 사업장 위생 및 복지시설 파악
- 안전관리 상태, 업무 수행내용 및 개선의견 지도

V. 주요 추진 과제

1.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

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의 의무가 있음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

2. 산업안전보건표지 부착

유해·위험한 시설 및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 또는 게시 되었는지 점검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(안전보건표지의 설치·부착)

3. 유해화학물질(물질안전보건자료) 관리

현업업무종사자가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성·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물질 안전보건자료 게시, 교육 등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유해화학물질 관련 직업병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 경고표시)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~ 제170조

4. 위험성평가 및 개선 / [중대재해처벌법]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

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함으로써 사고 및 질병 예방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(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, 보존)

- 최초 시행일: 2023년 6월 8일
- 정기평가
 - 시기: 2025년 5월 22일
 - 방법: 안전보건 위탁기관 주관(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(서명), 개선사항 도출)
- 수시평가
 - 시기: 산업재해 발생 시, 작업장 변경 시, 기계·기구·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 및 필요시
- 위험성 추정 결과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
 - ※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의 낮은 수준이면 별도의 개선 대책 수립 없이 해당 위험성에 대한 주지 안내로 종결할 수 있음.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반기 1회(연 2회) 이상 유해·위험 요인의 확인·개선에 관한 점검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됨

5.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

반복적인 동작, 부적절한 작업 자세,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의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유해 요인을 찾아 제거 및 감소하고자 함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(보건조치)
- ❖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(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

6. 안전보호구 지급과 관리

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이며,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
- ❖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7.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관리

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(일반건강진단)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(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)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(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)

8.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

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,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하여야 함

❖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

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(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)

■ 시기: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즉시

■ 사고발생 처리: 학교(기관) →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(063-240-3399)

9. 안전보건 교육

작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, 현업업무종사자 스스로 재해 사전 예방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)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- ❖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(인성건강과-2481, 2023.2.16.)

■ 관리감독자 교육

구분	대상	교육시간	방법	비고
정기교육	관리감독자	16시간 / 연간 (전년도 무재해시 1/2시간)	○ 집체교육 - 시기: 9월중 - 장소: 대한산업보건협회 - 강좌명 : 관리감독자법정교육 8시간	

■ 현업업무종사자 교육

구분	대상	교육시간	방법	비고
정기교육	현업업무종사자	12시간 / 매반기 (전년도 무재해시 1/2시간)	○ 집체교육 - 시기: 매월 1시간 - 장소: 문화관 503호 영상회의실 - 강사: 대한산업안전협회 차혜민 대리 ○ 물질안전보건 교육 - 현장 교육 - 일일 교육	
신규 채용시 교육	일용노동자 외	8시간 이상	○ 신입사원 발생 시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 교육 실시	
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	일용노동자 외	8시간 이상		

※ 대체근로자 및 일용직 3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1시간 이상

10. 안전보건협의체 회의

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대상: 우석대 담당자, 용역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 (삼문개발, 캡스, 하늘고속관광)
- 시기: 월 1회 실시
- 장소: 문화관 503호 영상회의실
- 심의·의결 사항
 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의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-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- 중대재해 (원인조사, 재발 방지계획 등)에 관한 사항
 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의 수, 자격, 직무, 권한 등에 관한 사항

11.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

사업장 내 작업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하여,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도출 및 개선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하고자 함

- 대상: 우석대 담당자, 용역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 (삼문개발, 캡스, 하늘고속관광)
- 시기: 분기 1회 실시

VI. 안전보건관리 계획표

계획: ○ 실시: ●

항목	세부 내용	기 준	1/4 분기			2/4 분기			3/4 분기			4/4 분기			업무 담당	소요 예산 (천원)
			3	4	5	6	7	8	9	10	11	12	1	2		
안전보건 관리체제	안전보건관리책임자 (총괄책임자)	변경 시 즉시	해당 없음												안전보건 업무담당	
	관리감독자 등 선임	변경 시 즉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	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	1회 이상 / 분기	해당 없음													
	안전보건관리규정	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	해당 없음													
	안전보건협의체 회의	1회 이상 / 매월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안전보건 교육계획· 법적기준	정기 안전보건 교육	사무직 6시간 / 반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관리책임자	
	신규 채용 시 교육	일용직 1주 초과 - 1시간 1개월 이하 - 4시간 그 외 - 8시간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관리감독자	
	작업내용 변경시 교육	2시간 / 변경 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안전관리자	
															보건관리자	
	특별 안전보건 교육	16시간 / 해당 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	관리감독자 교육	16시간 / 년 (무사고 시 1/2)							○					교육기관		

항 목	세부 내용	기 준	1/4 분기			2/4 분기			3/4 분기			4/4 분기			업무 담당	소요 예산 (천원)
			3	4	5	6	7	8	9	10	11	12	1	2		
안 전 검 사 / 정 밀 점 검 / 작 업 환 경 개 선	안전검사(13종)	1회 / 2년	해당 없음												안전보건 업무담당	
	작업환경측정 (유해인자 등)	1회 / 반기	해당 없음													
	정밀 / 특별점검	1회 / 반기			○			○			○			○		
	위험 기계·기구 및 설비 상태 확인	2회 / 월			○			○			○			○	관리감독자	
	보호구 구입 및 지급 / 3정 5S 운영	1회 / 월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관리감독자	
안전수칙 제·개정	필요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안전보건 업무담당		
작업의 표준화 제·개정	필요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관리감독자		
화 재 관 리	소방계획서 작성	매년 2월 말												○	소방 담당자	
	화재예방 특별점검	1회 / 반기		○						○						
소방시설 유지관리	상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
화재 대비 및 대응 교육훈련	2회 / 년			○						○						

항목	세부 내용	기 준	1/4 분기			2/4 분기			3/4 분기			4/4 분기			업무 담당	소요 예산 (천원)
			3	4	5	6	7	8	9	10	11	12	1	2		
위험성 평가	위험성평가 계획 수립·조직 구성·교육	최초 평가: 신설 정기 평가: 매년 수시 평가: 설비 이전 및 증설 시 재해 및 질병 발생 시				○									안전보건 업무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현장직원	
	공정 흐름도 파악 및 유해·위험 요인 분석						○									
	안전제안제도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	위험성 평가 실시							○								
	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행								○	○	○	○				
	총평 및 피드백												○			
	위험성 평가 결과 교육												○			
보건 관리	근로자 건강검진 (정기·특수 등)	법적 기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안전보건 업무담당 관리책임자 (사업주) 관리감독자 현장직원	
	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	1회 / 3년 사고 발생 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	작업 시작 전 스트레칭	매일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
평가·개선	안전보건관리 업무 보고 및 승인	1회 / 반기					○						○		안전보건 업무담당 관리책임자 (사업주)	

VII. 연간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표

항 목	세부 내용	기 준	업무 담당	소요 예산 (천원)
1월	소방안전교육(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사용법)	1시간 / 매월 또는 6시간 / 반기	안전보건 업무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	
2월	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			
3월	산업재해 재발방지			
4월	사다리 안전사고			
5월	작업 전 안전점검활동(TBM)			
6월	위험성평가 절차 및 시기			
7월	여름철 고온환경의 재해			
8월	교통사고 예방			
9월	보호구의 종류 및 착용			
10월	전기 위험성과 감전사고			
11월	사무실에서의 안전			
12월	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고			